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72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26767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8. 1.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접수 제213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A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로, “피고 회사”를 “A 주식회사”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B의 악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상태를 유발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B에게 수시로 현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18. 1. 12.경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6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16.경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갑 제13, 15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4. 28.부터 2017. 9. 28.까지 4회에 걸쳐 A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B은 2018. 1. 12.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모두 6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 1. 18.경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 2번 근저당권 외에 다른 담보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없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2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번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15. 말소된 사실, ⑤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8. 11. 14.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

명의를 계좌로 합계 45,0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최종송금일인 2017. 9. 28.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1. 12.경 B 개인과 사이에 차용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8. 1. 18.경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B에게 수시로 현금으로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빌려 주었는데, B이 위 대여금을 갚지 아니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대여 이후에 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B과 15년 정도 된 친구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로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을 운영하는 B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1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

